

제2벤처 붐 확산 전략
보고회



제2벤처 붐 확산 전략

2019. 3. 6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 . 추진배경	1
II . 추진전략	4
III . 주요 추진과제	5
IV . 향후 추진계획	21
[참고] 정책과제 추진 일정	22

「제2벤처 붐 확산 전략」 주요 내용

1 신산업·고기술 스타트업 발굴

① (신산업 창업) 바이오·핀테크·AI·ICT 등 분야 창업 촉진

- (바이오헬스) 의료 클러스터·기관내 스타트업 입주, 임상우수 5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 신설, 건강·연구데이터 공유, 정책펀드 6천억원 투자 등
- (핀테크)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조기 확정, 신용정보·P2P금융 제도개선,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완화, 전용펀드 150억원 투자
- (AI·ICT) 'Future Unicorn 50' 도입('19.下), 첨단분야 성장기업에 388억원 투자

② (기술인재 고기술 창업) 대학·연구소 등의 우수 인재가 기술 혁신형 창업하고, 이에 투자·멘토링·기술지원 등 강화

- (투·융자 금융)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투자에 펀드 6천억원 지원(~22년), 기술창업 1,900억원 보증, 대덕특구 투자펀드 230억원 조성
- (TIPS 고도화) 'Pre-TIPS→TIPS→Post-TIPS' 3단계로 고도화, 지원규모 확대('22년까지 TIPS 500개, Post-TIPS 50개)
- (학내·연구소창업) 교수 인사(승진·성과급 등)에 창업실적 반영, 대학(원)생 창업활동에 학사편의 제고 및 전문 학위과정 확산

2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활성화

① (혁신벤처 투자제도)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할 제도 기반 마련

- (BDC) 공모·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(Business Development Company) 도입
- (SAFE) 후위투자로 결정된 지분가치로 선위투자 가치를 산정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(SAFE: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) 방식 도입
- (사모재간접 공모펀드) 다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하여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활성화

② (엔젤·초기 투자 확충) 엔젤투자·크라우드펀딩 등에 인센티브

- (엔젤투자) 엔젤투자시 투자금 2배 완전보증(100억원), 기술보증기금의 투자 확대
- (크라우드펀딩) 모집한도·범위를 각각 7→15억원, 7년내 기업→모든 中소로 확대, 3년내 기술우수중소기업 투자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

3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

① (스케일업 지원) 간접금융 연계, 스케일업 전용펀드 등 지원

- (실리콘밸리은행) VC·스타트업과 협력 등 기업은행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
- (스케일업 전용펀드) 4년간 12조원 규모의 전용펀드 조성·운용, '22년에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에 공공부문 역할 지속
- (특례보증 등) 성장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 100억원, IP금융 활성화

② (글로벌화 지원) 글로벌 기업, 해외VC 등 연계 지원 강화

- (연계진출) 해외VC펀드 3천억원 추가 조성, 글로벌기업 통한 해외진출(20개社)
- (해외거점) 해외 혁신거점 2개소(美시애틀, 印뉴델리) 개소, 해외거점 공간 연계
- (신남방권) 경제사절단에 스타트업 참여, 한-ASEAN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등

4 벤처투자의 회수·재투자 촉진

① (민간 참여 확대) 기업·투자자 등의 회수시장 참여 촉진

- (벤처지주회사) 제도개선 신속 입법(공정거래법 개정) + 창투사 수준 세제혜택
- (전략투자 모펀드) 대기업·금융사와 스타트업간 전략적 보완을 위한 모펀드 조성
- (M&A 전용펀드) '21년까지 M&A 전용펀드 1조원 조성

② (엔젤·초기투자 회수) 엔젤 구주의 회수 활성화로 재투자 유도

- (전용펀드) 향후 4년간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 2,000억원 조성
- (양도차익 비과세) 유상증자 과정에서 구주인수시 구주 일부에 양도세 면제

5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

① (규제 재설계) 규제 샌드박스 연내 100건 이상 확대

② (우수 인재) 벤처기업에 인재유입 유도 및 혁신인재 양성

- (스톡옵션) 스톡옵션 비과세를 행사이익 기준 연간 2천→3천만원까지 확대
- (혁신인재) 데이터·AI 전문인력을 '23년까지 1만명 양성,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서울 개포동에 하반기중 개교

③ (창업거점) 신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* 개최, 스타트업 파크 신규 개소, 판교밸리·혁신센터 기능 강화 등 벤처 붐 확산

* 매월 신산업 분야별 경진대회 개최 →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회 확대, 창업열기 지속

I. 추진배경

◇ (필요성) 벤처·창업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인

□ 최근 美·中 등 주요국에서는 벤처·창업기업들이 각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들로 급부상

* (예) 美 구글·페이스북·아마존, 中 바이두·알리바바·텐센트 등

⇒ 2000년대초 세계적인 벤처창업 붐을 경험한 우리나라가 세계적 벤처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“제2의 벤처 붐” 조성 필요

◇ (경과) 혁신창업·벤처투자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대폭 확대

□ 그간 정부는 혁신성장의 핵심 축으로 벤처·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정책* 마련 → ‘창업·투자·회수’ 환경 개선

* 「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」(17.11월), 「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」(17.11월), 「혁신모험펀드 조성·운영계획」(18.1월), 「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」(18.1월), 「청년창업 활성화 방안」(18.3월), 「혁신창업 붐 조성방안」(18.5월)

① (창업)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확대,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·지원, 부담금 등 창업 걸림돌 해소

- 기술혁신형·생활혁신형 창업 지원, 벤처확인제도 개편 및 TIPS 방식 지원 확산, 부담금 면제 및 조세감면, 창업공간 확충 등 추진

② (투자) 재정·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,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통한 벤처투자 확대

- 10조원 규모(~20년)의 혁신모험펀드 조성, 엔젤투자·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지원,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 등

③ (회수) 회수시장 기능 회복 및 활성화, 기술혁신형 M&A 촉진, 재도전·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

-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및 코넥스·K-OTC 활성화, 대기업의 벤처기업 M&A 인센티브 강화,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

◇ (성과) 벤처투자 및 회수 확대 등 일부 성과 가시화

□ (벤처·창업) 신설법인과 벤처기업 모두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등 벤처·창업 열기가 확산되는 추세

* 신설법인(만개) : ('03) 5.3 → ('08) 5.1 → ('13) 7.6 → ('18) 10.2
 벤처기업(천개) : ('00) 9 → ('05) 10 → ('10) 25 → ('15) 31 → ('18) 37

○ 벤처천억기업은 10년 연속 증가하여 572개를 달성했으며,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창업기업도 '18년에 급증

* 벤처천억기업/당해연도 순증 : ('13) 453/37 → ('15) 474/14 → ('17) 572/59
 * 한국 유니콘기업(CB insights) : ('14) 2 → ('17) 3 → ('18) 6

□ (투자·회수) 신규 벤처투자 금액('18년 3.4조원) 및 IPO·장외주식 거래·M&A 등 회수 규모('18년 2.7조원)가 사상최고 수준 달성



* 자료 : 벤처캐피탈협회

◇ (한계) 창업의 질적 성장 및 벤처 붐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

□ 모험자본 확충 및 SW 기반 '가벼운 창업'의 증가로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, 질적 고도화 및 저변 확대는 여전히 미흡

① 앱 개발 등 SW분야·청년층 등 분야·계층이 일부에 편중
 → 기술력·전문성 및 창업의 다양성은 부족

* 벤처기업 대표 중 교수·연구원 출신 비중 : ('01) 16% → ('18) 8%
 약 10만개의 창업기업(신설법인) 중 교수 창업은 0.2% 수준('17, 233개)

② 혁신모험펀드 등 재정·모태펀드 중심의 투자가 지속 → 민간자본의 자율적인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

* GDP 대비 벤처투자('17년, %) : (美) 0.4, (中) 0.26, (韓) 0.19 ('18년 기준)

③ 창업초기 단계 정책지원에 주력 → 기술력.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

* '18년, VC의 기업당 평균투자금액 25억원 / 50억원 이상의 투자건수는 전체의 1.3%

④ 제한적인 자본시장,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회수 방식.참여 주체가 한정적 → 창업 후 회수.재투자의 연결고리가 미약

* 회수금액 비율('18년, %) : 장외매각 53.7, IPO 32.5, M&A 2.5

** 창업후 IPO까지 평균 13~15년 소요 → 엔젤투자자는 IPO를 통한 회수가 곤란

⑤ 규제 등으로 인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, 우수 인력의 유입도 부족 → 창업의 질적 성장 미흡

*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: ①실리콘밸리 ②뉴욕 ③런던 ④베이징(서울은 20위권 밖)

◇ (추진방향) 벤처.창업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

□ 벤처.창업을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로 정하여 정책역량 집중*

* 4대 Big Innovation(「2019년 경제정책방향」) : ①벤처.창업, ②주력산업, ③서비스산업, ④신산업

① (창업) 질적 도약을 위한 高科技·신산업 분야 창업 촉진

② (투자)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계기 마련

③ (성장) 지식재산권 기반 자금공급 활성화, 스타트업 해외진출 확대 등 스케일업 지원 대폭 강화 → 양질의 일자리 확대

* 고성장기업의 매출규모별 고용증가율('12년 대비 '15년, %, 중기부) : (10억원 미만) 13.3, (10~100억원) 43.4, (100~200억원) 54.0, (200억원 이상) 58.7

④ (회수) M&A 전용펀드 매칭, 재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자.창업가 등 다양한 플레이어의 회수.재투자 참여 유도

⑤ (인프라) 규제 샌드박스 활용 지원, 우수인재 유입 촉진 등을 통해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 강화

◇ 모처럼 살아난 벤처창업.투자의 불씨를 우리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질적 성숙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역량 집중

Ⅱ . 추진전략

◇ ①창업 → ②투자 → ③성장 → ④회수.재투자의 성장단계
강화와 ⑤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(4+1전략)

⇒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

< 확산 전략 >

‘제2의 벤처 봄’을 통한 ‘혁신적 포용국가’ 달성

목표

①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

* 신규 벤처투자 : ('18년) 3.4조원 → ('22년) 5조원

②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

* 유니콘 기업 수(CB insight '19.1월) : 美 151, 中 80, 英 17, 印 13, 獨 8, 韓 6

③ M&A가 활성화된 역동적인 회수시장 조성

* M&A 투자회수 비중 : ('18년) 2.5% → ('22년) 10.0%

전략 및 과제

[전략 1] 신산업·고기술
스타트업 발굴

- ① 신산업 창업
- ② 기술인재의 고기술 창업

[전략 2] 벤처투자 시장내
민간자본 활성화

- ① 혁신 벤처투자 제도 도입·개선
- ② 엔젤·초기단계 등 벤처투자 확충

[전략 3] 스케일업과
글로벌화 지원

- ①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
- ② 혁신벤처의 글로벌화 지원

[전략 4] 벤처투자의
회수·재투자 촉진

- ① 투자자·기업 등의 회수시장 참여 확대
- ② 엔젤·초기투자의 회수 촉진

[전략 5]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

- ① 유연한 규제 재설계 ② 핵심인재 유입 확대 ③ 혁신 창업거점 활성화

Ⅲ. 주요 추진과제

1 신산업·高科技 스타트업 발굴

1. 신산업 창업

① 바이오헬스 사업초기 부담 완화 및 투자 강화

- 병원·실험실 등 의료 인프라의 개방공유 확대로 R&D·임상·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사업초기 부담 완화
 - 첨단 설비를 갖춘 클러스터·의료기관에 스타트업 입주·사업화를 지원하고 임상경험 우수 병원 5개소*에 개방형 실험실 신설
 - * 고려대 구로병원, 아주대병원, 동국대 일산병원, 전남대병원, 인제대 부산백병원
 - ‘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*’ 사업 등 표준화된 개인 건강·연구데이터 공유로 스타트업의 **新서비스개발 지원**
 - * 건강데이터의 동의·수집→보관→개방·활용 쉼주기에 활용절차표준 개발, 활용 확산
- 바이오 벤처투자에 특화, 既조성된 정책펀드 6천억원*을 집중 투자하고 유망 벤처에 R&D연계 지원 등 성장 촉진
 - * '13.1월부터 1,340억원 출자로 바이오·의료분야 정책펀드 8개 6,000억원 조성

② 핀테크 기업의 **新서비스 개발·투자유치** 여건 개선

-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기존 금융기관과 연계 성장 지원
 - 올해 4월 실시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전신청 105건 중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을 확정하고 테스트비용 지원(40억원)
 - 개인 금융데이터 활용, P2P 등 금융 **新서비스** 개발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, P2P금융 법제화의 신속 추진
- 금산법·은행법 등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을 완화하고 핀테크 전용펀드(150억원) 등 금융지원 강화

③ AI·ICT플랫폼 등 Deep-Tech 창업 확대

- 5~10년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혁신 ICT기업을 발굴, 집중 육성하는 ‘(가칭)Future Unicorn 50’ 프로그램 도입(’19년 하반기)
 - 매년 50개 내외 유망 ICT 스타트업을 공모 선발하여 유니콘 진입을 위한 자금·멘토링·R&D·기술이전 등 연계 지원
- 지능형 로봇, AR/VR, 지능형반도체, 첨단소재 등 첨단 분야 성장 기업에 최대 7억원(사업화 3 + R&D 4) 패키지를 ’19년 388억원 지원
- ICT대기업의 기술역량·인프라를 스타트업에 공유,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‘ICT 창업 민관협의체’ 구성·운영(5월)

④ 제조창업 활성화와 분사창업 지원

- 제조창업 기업의 부담금 감면 및 창업지원사업 우대 지원
 - 올해부터 부담금 면제항목을 12→16개로 확대하고, 공장 설치와 관련된 부담금 면제기간을 5→7년으로 연장
 - * (신규면제) 특정물질제조·수입, 교통유발, 지하수이용,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 (기간연장)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 면제
 - 부담금 면제 요건인 소규모 제조업소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 (중기부 고시 개정)
 -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주요 창업지원사업에서 기계·전자 등 제조분야를 최대 70%까지 우선 선발
- 공공기관 분사창업 촉진을 위해 연구원 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의 5년 이내 창업 휴·겸직 허용 (벤처특별법 개정)
- 대기업의 분사창업기업 지원시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을 ’19년 2점으로 신설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추후 확대 추진

2. 기술 인재의 고기술 창업

① 대학기술지주회사 펀드 조성 및 연구소기업 투자 확대

-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대학내 창업기업 등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펀드*를 '22년까지 6천억원 신규 조성

* 기술사업화 촉진펀드(중기부) + 대학창업펀드(교육부) 등

< 기술지주회사 펀드 조성계획 (단위: 억원) >

구 분	'19	'20	'21	'22	계
신규 조성액	500	1,000	1,500	3,000	6,000

- 연구소기업에 20% 이상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모태펀드를 우선 출자하고 운용사에 투자성과보수 추가 지급
- 대학·연구기관내 기술창업기업에 '19년 1,900억원 보증(기업당 최대 30억원, 보증률 90~100%), 컨설팅·IPO 등 지원(기술보증기금)
 - 또한, 대덕특구 소재 초기 연구소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구펀드를 올해 23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

② TIPS 프로그램 고도화와 지원규모 확대

- TIPS 체계를 ①Pre-TIPS → ②TIPS → ③Post-TIPS로 고도화하고 '22년까지 TIPS 500개, Post-TIPS 50개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

- Pre-TIPS 시범사업*을 지역창업 지원에 특화,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창업 지원 강화

* '18년 12개 기업을 발굴, 6억 규모(TIPS의 1/10수준) 지원

- 제조·컴퍼니빌딩, 바이오·핀테크 등 민간 기업성장 기반이 부족한 신성장 분야* 엑셀러레이터를 TIPS 운영사 선정시 우대

* '20년 2개(경영, 제조) → '22년 5개(예 : 바이오, 핀테크, ICT 등 추가) 분야로 확대

③ 대학·연구소내 기술기반 창업 확산

- (학내창업) 교수의 창업도전을 적극 평가·보상하고 학생이 쉽게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
 - 교수의 승진·성과급에 창업실적 고려하도록 대학에 권고*하고, 창업·사업화 성과로 업적평가 받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
 - * 창업친화적 교원 인사제도 제작·보급('19.12월) 등
 - 석사과정 학생이 창업활동으로 논문을 대체, 학위 취득하거나 창업·연구를 병행하는 대학원 수준의 학위과정 적극 홍보·확산
 - * 창업친화적 대학원 학사제도 메뉴얼 제작·보급('19.12월) 등
 - 대학생 창업, 혁신 스타트업 인턴십*의 진로체험 학점인정 등을 적극 장려하여 학생의 학사편의 제고
 - * (예) 유니콘 기업 등 국내 벤처·창업기업에 학교장 추천으로 우수 학생 인턴십 수행
- (실험실 창업) 전담보육기관*을 통해 시장조사·아이템 검증·제품 개발 등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팀의 실험실 창업 지원(68억원)
 - * 수도권·강원(고려대, 성균관대), 충청·호남(KAIST), 경상·제주(POSTECH), 여성특화(신규 선정)
- 또한, '18년 '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'으로 신규 선정된 5개 대학*내 우수 실험실의 기술 고도화·창업 밀착 지원(31억원)
 - * 송실대, 연세대, 전북대, 한국산업기술대, 한양대

2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활성화

1. 혁신 벤처투자 제도 도입·개선

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(BDC) 도입

-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‘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*(BDC)’ 도입

* BDC(Business Development Company) : 공모·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

- 집합투자업 인가를 부여하여 벤처캐피탈의 독자적 BDC 운용 허용
- 증권사·자산운용사 등 BDC 운용주체가 벤처캐피탈의 유망기업 발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업방안 마련

- 벤처캐피탈이 BDC에 운영주체로 참여하여 창투조합·신기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*으로 투자시 세제지원 검토

* (예) 펀드의 40%이상 창업기업 투자, 금융·부동산·숙박·음식점업 외 업종 투자 등

- 3월부터 BDC 민간TF를 운영하여 최종 제도운영 방안*을 확정하고,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·발표 추진

* 총자산중 비상장·코넥스기업 등 투자 비율, 투자상품, 투자자 보호, 공시의무 등

② 조건부지분인수계약(SAFE) 투자방식 신속 도입

-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‘조건부지분인수계약(SAFE) 제도’ 즉시 도입

- 후위투자로 결정된 지분가치로 선위투자 가치를 산정하여 창업초기 과도한 투자자 지분요구 등 불필요한 마찰 예방

* (美 Y-Combinator) '13년 도입 후 투자의 30% 이상에서 SAFE 활용

- 엔젤 등 액셀러레이터 대상으로 우선 도입(창업법 시행규칙 개정)하고, 도입 효과를 살피며 모든 벤처투자자로 확대 추진(벤처투자촉진법 제정)

③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투자 활성화

□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를 활성화하여 일반·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

○ 다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하여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* 출자 여건 마련(창업법·벤처법시행령 개정)

* 출자자 49인 이하로 결성가능

< (예시) 벤처펀드 출자 제도개선 >

현 행			개 선		
출자자A 25억원	1인	82인	출자자A 25억원	1인	3인
+			+		
출자자B 25억원	1인		출자자B 25억원	1인	
+		+			
사모재간접 공모펀드 50억원 일반투자자 80인	80인		사모재간접 공모펀드 50억원 일반투자자 80인	1인	
벤처펀드 출자자 49인 이상 → 결성 불가			벤처펀드 출자자 49인 이하 → 결성 가능		

④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검토

□ 경영권 희석 우려없는 투자유치와 스타트업의 창업가 정신 유지를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검토(벤처특별법 개정)

2. 엔젤·초기단계 등 벤처투자 확충

* 연간 엔젤투자규모('18년 4,394억원)를 '22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 추진

① 엔젤투자 특례보증 및 투자 강화

□ 엔젤투자 유치시 투자금액의 2배까지 완전 보증(보증율 100%) 하는 특례보증 100억원 신설(기술보증기금)

○ 금융기관의 간소화된 여신심사로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여 엔젤·초기기업의 스케일업 가속화

- 기술보증기금이 투자재원(기본재산 20%내)을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(구주 인수)에 집중 투자

② 크라우드펀딩 활용편의 제고 및 인센티브 확대

-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의 7→15억원 확대에 더해, 기업범위도 창업 7년내 기업→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(자본시장법 개정)
- 창업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*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
 - * 벤처기업외 기술평가 우수기업,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

③ 연기금의 벤처분야 전문성 강화

- 국민연금 투자정책자문위원회에 벤처투자 전문가를 추가하여 벤처투자 전문성, 운용 수익률 제고
 -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며, 수익성 높은*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도·전문성 제고
 - * 동일기간 투자시 벤처펀드 평균수익률이 상장시장 대비 2~8%p 높음

④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시장내 역할 확산

- 벤처분야에 새로운 상품 출시 등 시장진입·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민간 은행의 자율적인 노력과 주요 성공사례 확산
 - (하나은행) '19년 모태펀드와 함께 '유니콘 펀드' 3천억원 조성 추진
 - (우리은행) 스타트업에 200억원 직접투자 + 향후 3년간 3천억원 모펀드 조성
 - (신한은행) 향후 4년간 'Future's Lab'의 200개社 성장지원, 창업·벤처에 1,400억원 투자
- 필요시, 금융기관에 벤처시장 투자동향 등 벤처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 기업·투자자·액셀러레이터 연계 등 적극 협조

3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

1.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

① 실리콘밸리은행* 기능 도입

* 벤처투자자(VC)와의 협업을 통해 신뢰도 높은 벤처투자자에게 투자받은 스타트업에 대출 등 지원

- 창업·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보유한 기업은행의 스케일업(Scale-Up) 지원 기능 강화
 - VC 및 스타트업 업계와 투자·대출정보 공유를 위한 협업채널 마련
 -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후속 투자 및 대출자금을 기업은행이 지원

②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·운용

- 향후 4년간('19~'22)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·운용
 -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기존 모태펀드, 성장지원펀드 등에 설치

< 벤처투자 로드맵(案) >

구 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합계
벤처펀드 결성	4.8조원	5.3조원	5.8조원	6.4조원	22.3조원
스케일업 펀드	2.5조원	2.5조원	3.5조원	3.5조원	12.0조원
신규 벤처투자 (GDP대비 투자비중)	3.8조원 (0.21%)	4.3조원 (0.23%)	4.6조원 (0.24%)	5.0조원 (0.25%)	17.7조원

- '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에 더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지속
 - 특히, 높은 리스크 등으로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초기·엔젤 투자와 회수시장, 신산업 투자에 모태펀드의 역할 강화

- 벤처투자시장 모니터링과 정책 펀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정부-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
 - 분야별 정책펀드간 역할 정립, 모태펀드 출자금 배분, 연간 운용계획 등을 「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」에서 논의

③ 성장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 1천억원 신설, 상장지원 확대 등

- 1천억원 규모의 성장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을 시범 운영하여 장기간 매출이 없거나 영업이익 적자인 기업에도 융자 제공
 - 혁신성·성장성에 따라 기업당 최대 100억원 보증한도 제공 (기술보증기금)
- 성장단계 창업기업(업력 3~7년)이 자본시장에서 쉽게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
 - 기업별 특성(“상장준비群”, 상장추진群“)에 따라, 상장 절차 및 전략 교육, 전문가 멘토링, 기술성평가 등을 집중 지원
 - 상장 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 대폭 상향(’18년 3천만원 → ’19년 1억원)

④ 지식재산권(IP) 금융 활성화로 기술 스타트업 성장 지원

- 중소·벤처기업이 보유한 IP가치를 고려해 투자하는 IP펀드를 올해 1,100→2,200억원까지 2배 확대
- IP담보의 범위를 해외특허까지 넓히고 IP대출 취급은행도 3→6개로 확대*하여 벤처기업의 IP금융 지원
 - * (’18) 산업·기업·국민銀 + (’19) 우리·신한·하나銀 등 시중은행 추가
- 은행과 공동 출연금을 조성하여 IP대출 부실발생시 담보IP를 매입하는 회수지원사업으로 高리스크 완화

2. 혁신벤처의 글로벌화 지원

①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·육성 강화

- ‘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’를 3천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 (現 2.1조원)하여 우수 해외 VC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도
 -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IR 역량, 해외시장 진출 노하우 전수
 - 투자 이후 해외 벤처캐피탈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의 글로벌화, 대규모 후속투자 등 연계 지원
- * ‘글로벌 Value-up 프로그램’ : 500Startups, Strong Ventures 등 우수 벤처캐피탈 전문가들이 기업별 성장단계를 고려하여,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진출 멘토링

② 글로벌 기업, 액셀러레이터 등 연계 지원

- 해외 글로벌 기업*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유치, 기술제휴, 현지화 등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('19년 20개사)
 - * 협력수요 (예시) : (헬스케어) Bayer (독일), 존슨앤존슨(미국) / (ICT·모바일) KDDI (일본), 알리바바(중국)/(핀테크) 스텐다드차타드(싱가포르), 스코틀랜드왕립은행(영국) 등
 - 해외 국가·산업별로 유망 협력수요 발굴, 글로벌 기업의 창업 인큐베이팅과 국내·외 IR 피칭 등 연계
- 최고 수준의 국내·외 액셀러레이터*를 초청하여 TIPS 등 우수 스타트업 투자유치 활동 지원
 - * (예) 포브스지 선정 탑 티어(Top-tier) 액셀러레이터 등

③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 신설 및 공공기관 해외거점 연계

- 스타트업의 해외진출·성장을 돕기 위한 해외 혁신거점을 6월 美시애틀, 8월 印뉴델리에 신설
 - 신설 이후 운영 결과를 살펴, 베트남·인도네시아 등 기타 해외 주요거점에 추가 설립 추진
- 공공기관 보유 해외 거점공간 70여개소*를 확보하여 스타트업 활동에 유리한 ‘공유오피스’ 형태로 임대·운영
 - * 수출 Business Incubator 22, 해외민간네트워크 40, 코트라 6
 - 현지 벤처투자자·액셀러레이터·기업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*하여 현지의 우수 창업역량 학습 지원
 - * (예: 위워크랩) 지역 액셀러레이터와 제휴하여 멘토링, 네트워킹, 교육 등 지원
- 본투글로벌센터의 사전보육과 KIC*등 해외거점 진출 연계로 스타트업의 준비된 해외진출 지원
 - * (Korea Innovation Center) 과학기술·ICT 등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생태계 참여·해외진출 등 지원, 현재 실리콘밸리·베를린·워싱턴·베이징 등 4개소 운영중

④ 신남방권 시장에 스타트업 진출 지원

- 정상순방시 경제사절단에 유니콘 기업 등 유망 스타트업 참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진출의 계기로 활용
 - * `18년 경제사절단 중 창업 7년 이내 기업 비중은 약 18% 불과
 - ‘19.11월 한-ASEAN 특별정상회의 추진과 연계하여 ‘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’ 개최 추진
- 스타트업 진출수요가 많은 대만·태국·말레이시아 등의 보증 기관과 협약을 통해 연내 상호보증 사례 창출 추진(기술보증기금)
- 한-ASEAN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창업비자, 외국인 창업허가 등 협의·지원하는 스타트업 협의체 구성

4 벤처투자의 회수·재투자 촉진

1. 투자자·기업 등의 회수시장 참여 확대

①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우선 입법 및 세제혜택 부여

- 자회사 지분보유,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등을 완화 적용하는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조기 제도개선*
 - * 자산규모(5천억→3백억) 등 설립요건 완화, 자회사 지분요건 완화,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,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(7→10년) 등
 - 既발의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입법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우선 입법 추진
- 벤처지주회사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 유도
 -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 충족시 출자로 취득한 초기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·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
- 대·중견기업의 창업·벤처기업 투자·M&A 성공사례를 발굴·홍보하여 M&A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

② '전략 벤처투자 모펀드'로 대기업·금융社 전략투자 확대

- 민간 대기업·금융社 등의 스타트업 투자, M&A 촉진을 위해 '(가칭)전략 벤처투자 모펀드' 조성 지원
 - 대기업·금융社 등이 출자시 모태펀드 매칭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출자공고에 따라 자펀드 투자 분야 선정
 - 자펀드가 투자한 벤처기업이 IPO·M&A 등 지분매각시 모펀드 민간 출자社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여 M&A 선점 지원
-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출자社-모태펀드와 위험 분담 등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검토

③ M&A 활성화에 공공·민간재원 투자 집중

- 성장사다리펀드 등에 민간 자본 매칭 등으로 M&A 자펀드를 지속 확대 추진(現 성장사다리펀드의 M&A 자펀드는 1.3조원 규모)
- '21년까지 M&A 전용펀드 1조원을 신설하여 지속 증가하는 벤처투자 유입 자금의 원활한 회수 지원
 - 금년중 모태펀드 출자로 3천억원 규모의 M&A 펀드 신설
- 벤처펀드 100% 출자로 자회사 SPC를 설립하고 은행에서 M&A 등 대형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레버리지 프로그램 신설
 - ※ 다만,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, 최초 도입 등 고려, 조합원 특별결의 의무화

2. 엔젤·초기투자의 회수 촉진

①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 2천억원 신규 조성

- 엔젤투자자의 투자 지분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를 향후 4년간 2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

< 엔젤 세컨더리펀드 조성계획 (단위: 억원) >

구 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합계
신규 조성액	300	500	600	600	2,000

② 엔젤투자 구주인수시 양도차익 비과세

-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시 양도차익 비과세 하여 간접적으로 엔젤투자자의 신속한 회수·재투자 유도
 - 다만, 벤처캐피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규모의 일정 비율(예: 10%) 이하의 구주*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정 적용
 - * 엔젤투자자가 출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에 한정

5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

1. 유연한 규제 재설계

①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확대

- 정부-민간협업을 토대로 스타트업 규제애로 등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연내 신속히 창출
 - 산업융합법·정보통신융합법 샌드박스 1차 접수과제 20건중 既처리 완료된 13건* 외 잔여과제 조속 확정 및 추가 발굴 지속추진
 - * 도심 수소충전소, 유전체 분석 서비스,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, 모바일 전자고지서 등
 - 4월중 시행되는 금융혁신법·지역특구법을 통해 금융·핀테크 분야와 지자체 사업 규제애로를 신속 해소
- ‘벤처천역지원단’을 구성하여 매출천역벤처기업(572개, '17년말 기준)이 성장단계에서 겪는 사업애로·규제를 발굴·해소

② 지식재산권·특허권 등 기술보호 및 기술전략 수립 지원

- 중소·벤처기업의 기술·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를 위해 **비밀유지 협약 의무화,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활용 확산** 추진
 - 상표·디자인 등 무형자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**침해자 쏠이익을 권리자 손해로 간주**(‘18.12월, 특허법 개정안 발의)
 -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에 특허·영업비밀·디자인 침해 범죄를 포함하고 기술침해에 대해 **사실조사·시정명령체계** 도입
- 해외 선도기업 특허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분야별 벤처 기업들에게 유용한 기술 파악·습득 및 R&D전략 수립 지원
 - * 공통핵심기술 공모(‘19.4월), 특허 분석 및 유망 R&D 과제 도출(‘19.11월)

③ 기술성·성장성 위주로 벤처확인제도 개편

- 보증·대출 실적위주로 판단하던 **벤처기업**을 민간주도 ‘**벤처확인 위원회**’가 기술성·성장성 위주로 확인하도록 개편
 - 既발의된 **벤처특별법 개정안**(’18.11월 국회 제출)의 **조속 입법**을 지원하고 법 통과 前 하위 법령을 우선 마련

2. 핵심인재의 유입 확대

①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

- 자금력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회사-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혜택 확대
 - 비과세 한도를 행사이익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연간 3천만원 까지 확대(現 2천만원*)하여 우수인재 유입에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
 - * (현행) 시가 - 매입가액 = 연간 2천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

② 데이터·AI 전문인력 '23년까지 1만명 양성

- **데이터·AI 핵심인재**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 **데이터 인력 양성 확대**
 - '19년 상반기 AI 대학원을 3개* 신설하여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빅데이터 아카데미에서 데이터 핵심인력 약 300명 배출
 - * 고려대, 성균관대, 한국과학기술원(KAIST)
 - 빅데이터 청년인재 육성대학을 '19년 10개소로 확대 공모·선정하고 실무인재 600명 교육
 - **신약·유전체 R&D 사업과 연계하여 바이오 빅데이터 관리 기관(생명연, KISTI 등)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**

③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 및 혁신인재 양성

- 우수 학생·멘토 유치, 산학협력 확대 등에 유리한 **디지털혁신파크**(서울 개포동)에 **학교입지 확정**
 - * '19.2월 과기정통부-서울시간 업무협약을 체결 → 서울시 소유건물 무상임대
- 연간 **500명** 규모로 학생을 선발하여 **하반기 개교**하고 2년 과정의 **프로젝트 기반 자기주도학습** 등 모든 프로그램*을 **무상 제공**
 - * 벤처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 → 창업과정, 기업가정신 교육 등 포함
- 초기 안정화 차원에서 **SW·IT분야 공공기관**이 운영하고, 이후 **비영리 재단법인화** 등 민간의 주도적 운영 추진
- 글로벌 역량을 갖춘 ICT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 대상으로 ICT관련 외국기업에 직무 중심 인턴십 수행 지원
 - * 지원인원·기간 : 20명, 6개월 / 지원국가 : 美실리콘밸리, 日도쿄

3. 혁신 창업거점 활성화

① 新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 개최

- 매월 신산업 분야별 경진대회*를 개최하여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열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
 - * 3월(행안부-공공데이터), 4월(복지부-바이오), 5월(국토부-자율주행), 6월(포스코-AI, 중기부-여성창업), 7월(강원도-차세대 의료기) 등
- 경진대회 우수 스타트업에 전국 단위 ‘도전! K-스타트업’ 본선(8~11월) 진출권을 부여하여 연속적인 도전 지원
- 우수 스타트업에게 벤처펀드 투자, 자금융자, 우대보증 등 금융 지원과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 제공
 - * 도전! K-스타트업 등 방송 출연을 통해 창업도전 홍보 유도(3개월간 10회 방영)

② '스타트업 파크' 등 혁신거점 신규 조성

- 벤처·창업기업이 다양한 창업생태계 구성원과 교류·협력하는 새로운 혁신거점 '스타트업 파크'를 연내 1개소 조성
 - 3월중 지자체 공모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설·운영방식 설계
- 국내 최대 청년창업 플랫폼 '마포 청년혁신타운' 연내 개소 추진
 - 핀테크·AI·블록체인 등 고기술 분야에서 민간 AC·VC 중심으로 스타트업 선발, 금융·컨설팅*·해외진출 등 최대 3년간 성장 지원
 - * 창업진흥원, KOTRA 및 각 분야 전문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
- 민간·공공단체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전문랩 3개소, 일반랩 52개소 등 연내 55개소의 메이커스페이스 신규 조성
 -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'22년까지 일반랩 350개, 전문랩 17개 구축

③ 판교밸리·혁신센터 등 기존 거점 기능 강화

- 판교2밸리에 우수 인재유입 촉진을 위해 복합 문화공간 (I-Square),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등 정주여건 개선 추진
 - 지방 도첨산단 4곳(대구·광주·인천·순천)에 설치하는 '혁신성장센터'에 판교밸리의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 탑재 → 추후 11개로 확대
-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와 협업 확대
 - * (예) 혁신센터를 활용한 특허 기반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(특허청)

IV. 향후 추진계획

- 제2벤처 붐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사항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추진
- 추진일정에 따라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의 사업추진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보완 추진

추진 과제		소관부처	추진 일정
1. 신산업·高科技 스타트업 발굴			
1-1. 신산업 창업			
1-1-1. 클러스터·의료기관 내 스타트업 입주	복지·과기	계속	
1-1-2.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5개소 신설	복지부	'19.3	
1-1-3.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동	복지부	'19.3	
1-1-4.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심사	금융위	'19.4	
1-1-5. 신용정보법 개정 및 P2P금융 법제화	금융위	'19.상	
1-1-6.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 완화	금융위	'19.상	
1-1-7. 핀테크 전용펀드 150억원 조성	금융위	'19.3	
1-1-8. 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 도입	과기정통부	'19.하	
1-1-9. ICT 창업 민관협의회 구성	과기정통부	'19.5	
1-1-10. 제조창업기업 부담금 감면 및 기간연장	중기부	'19.6~	
1-1-11. 제조분야 창업지원사업 우선 선발	중기부	'19.1~	
1-1-12. 공공기관 임직원 창업 휴·겸직 확대	중기부	'19.6~	
1-1-13.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확대	중기부	'20.1~	
1-2. 기술 인재의高科技 창업			
1-2-1. 대학기술지주회사 펀드 조성	교육·중기	'19~'22	
1-2-2. 연구소기업 벤처펀드에 모태펀드 우선 출자	중기부	'19.2~	
1-2-3. 대학·연구소 기업에 1,900억원 우대보증	중기부	'19.1~	
1-2-4. 4차 특구펀드 신규 조성	과기정통부	'19.하	
1-2-5. Pre-TIPS 본사업 전환	중기부	'19.3~	
1-2-6. 신성장분야 엑셀러레이터 TIPS 우대	중기부	'19.12~	
1-2-7. 교수의 창업실적 반영 인사제도 개선	교육부	19.하	
1-2-8. 대학원 벤처학위 과정 운영	교육부	계속	
1-2-9. 대학생의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개선	교육부	'19.하	
1-2-10.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 지원	과기정통부	계속	
1-2-11.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원 확대	교육·과기	~'20년	

추진 과제		소관부처	추진 일정
2.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			
2-1. 혁신 벤처투자 제도 도입			
	2-1-1.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(BDC) 도입	금융위	'19.상
	2-1-2. BDC 투자활동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	기재부	'19.12
	2-1-3. 조건부지분인수계약(SAFE) 제도 도입	중기부	'19.4
	2-1-4.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	중기부	'19.4
	2-1-5.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	중기부	'19.상~
2-2. 엔젤·초기단계 등 벤처투자 확충			
	2-2-1. 엔젤투자 특례보증 신설	중기부	'19.7
	2-2-2. 클라우드 펀딩 범위 확대	금융위	'19.상
	2-2-3. 지분형 클라우드펀딩 양도세 비과세 확대	기재부	'19.12
	2-2-4. 국민연금 투자정책자문위원회 벤처전문가 추가	복지부	'19.상
3.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			
3-1.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			
	3-1-1. 실리콘밸리은행 기능 도입	금융위	'19.하
	3-1-2. 스케일업 전용펀드 12조원 조성	중기·금융	계속
	3-1-3.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운영	기재·금융	계속
	3-1-4. 성장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 신설	중기부	'19.7
	3-1-5. 상장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	중기부	'19.1
	3-1-6. IP펀드 규모 확대	특허청	'19.6
	3-1-7. IP대출 취급은행 확대	특허청	'19.12
	3-1-8. IP대출 회수지원사업 개시	특허청	'20.3
3-2. 혁신벤처의 글로벌화 지원			
	3-2-1. 해외 VC 글로벌 펀드 3천억원 조성	중기부	'19.2
	3-2-2.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 신설	중기부	'19.6
	3-2-3. 공공기관 해외거점의 공유오피스화 및 연계	중기·산업	'19.6
	3-2-4. 정상순방 경제사절단에 스타트업 참여	중기·산업	'19.3
	3-2-5.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	중기부	'19.11
	3-2-6. 해외보증기관-기보간 상호보증	중기부	'20.1
	3-2-7. 신남방권 스타트업 협의체 구성	중기부	'19.11

추진 과제		소관부처	추진 일정
4. 벤처투자의 회수·재투자 촉진			
4-1. 투자자·기업 등의 회수시장 참여 확대			
	4-1-1.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입법	공정위	'19.4
	4-1-2. 벤처지주회사 세제혜택 부여	기재부	'19.12
	4-1-3. 전략 벤처투자 모펀드 조성	중기·금융	계속
	4-1-4. 전용펀드 등 M&A 펀드 1조원 신설	중기·금융	~'21
	4-1-5. 레버리지 프로그램 신설	중기부	'19.7
4-2. 엔젤, 초기투자의 회수 촉진			
	4-2-1.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 2천억원 조성	중기부	~'22
	4-2-2. 엔젤투자 구주인수시 양도차익 비과세	기재부	'19.12
5.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			
5-1. 유연한 규제 재설계			
	5-1-1.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	기재·산업·과기·중기·금융	계속
	5-1-2. 벤처천역지원단 구성·운영	중기부	'19.3
	5-1-3.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산 추진	특허청	'19.6
	5-1-4.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 확대	특허청	'19.3
	5-1-5. 벤처확인제도 개편	중기부	'19.12
5-2. 핵심인재의 유입 확대			
	5-2-1.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	기재부	'19.12
	5-2-2. AI대학원 3개소 신설	과기정통부	'19.상
	5-2-3. 바이오 등 데이터 인력 양성	과기정통부	~'23
	5-2-4.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교	과기정통부	19.하
5-3. 혁신 창업거점 활성화			
	5-3-1. 新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 개최	중기부	계속
	5-3-2. 스타트업 파크 조성	중기부	'19.3
	5-3-3. 마포 청년혁신타운 개소	금융위	'19.하
	5-3-4. 판교2밸리 정주여건 개선	국토·중기	계속
	5-3-5. 지방 도시첨단산단에 혁신성장센터 조성	국토·중기	~'22